

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

□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시행

○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대상 확대가 단계적 (3단계)으로 진행 중

- 2026년은 영양표시 확대가 ①2단계 완료 및 ②3단계가 시작되는 시기

시행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2018	시행 :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2019			
2020	시행 : 코코아가공품		
2021			
2022		시행 : 품목류 매출액 120억원 이상 영업소	
2023			
2024		시행 : 품목류 매출액 12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영업소	
2025			
2026		시행 : 품목류 매출액 50억원 미만 영업소	시행 : 업종별 매출액 120억원 초과 영업소
2027			
2028			시행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영업소
대상	시리얼류 등 4개 추가	떡류 등 61개 추가	버터 등 77개 추가

① (2단계 추진 완료) 2026년 1월 1일부터 떡류 등 61품목 영양표시가 전면 시행되므로,

-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61개 품목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임 <대상 품목 붙임 1 참고>

② (3단계 추진 시작) 2026년 1월 1일부터 버터 등 77개 품목이 영양표시 대상 신규 추가 <대상 품목 붙임 2 참고>

- (시행시기)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시행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하였으며, 2026년은 2022년 업종별 매출액 기준 120억원 초과하는 영업소가 영양표시 시행 대상임

기 준	시행시기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1.1.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1.1.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영양표시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함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마.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 무당, 무가당 표시 제품 정보 제공 강화 시행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를 강조표시한 제품의 경우, ①열량, ②감미료 사용 여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 ① (열량 표시) 저열량* 또는 열량 감소**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강조표시 주변에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 등을 표시하여야 함(14포인트 이상 활자크기)

* 저열량 :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 열량감소 : 동일한 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열량을 산출하여, 표준값과 비교하여 최소 25% 차이가 있어야 하며, 열량 차이의 절대값이 '저' 기준 값보다 커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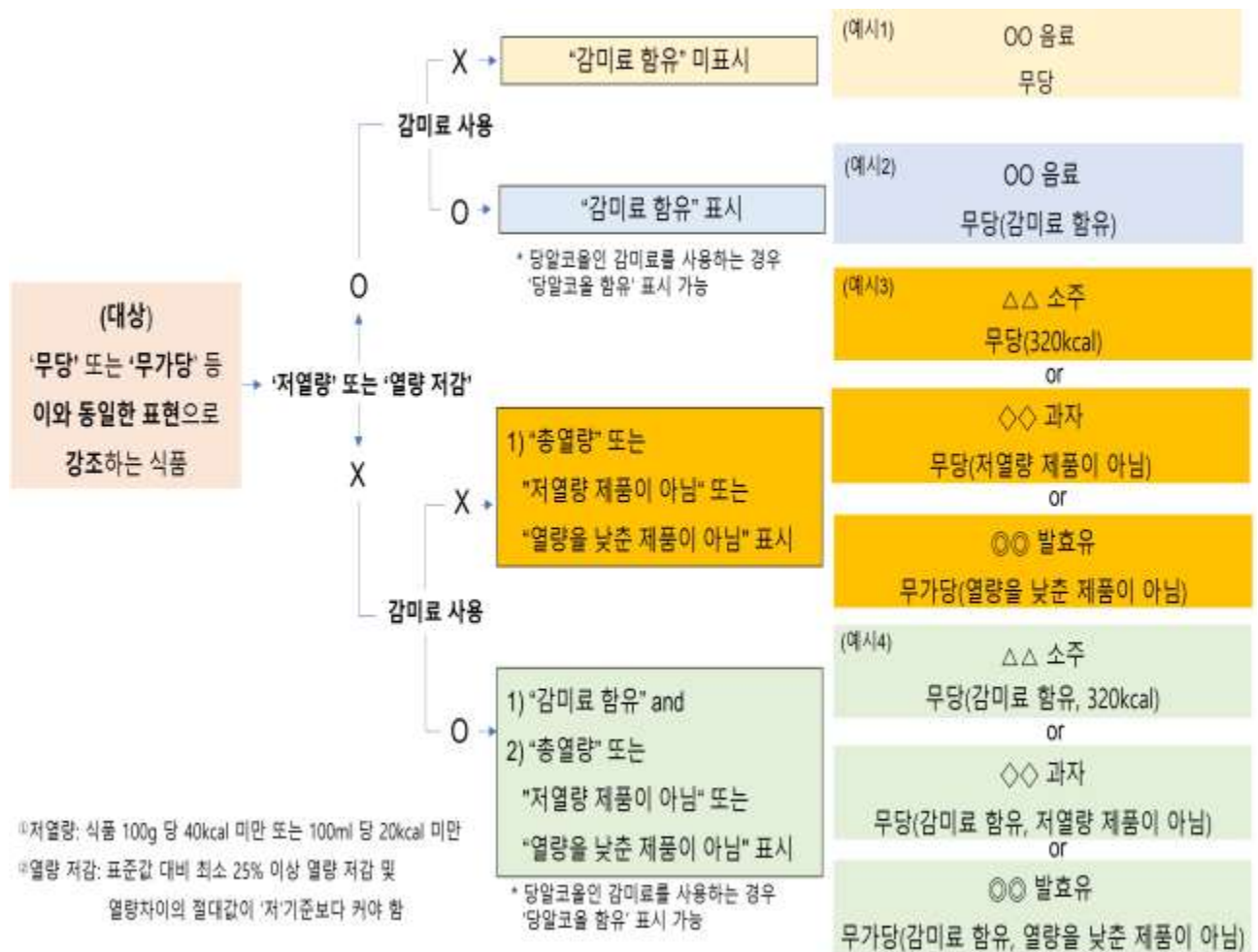
- ② (감미료 사용)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감미료 함유'를 '무당' 또는 '무가당'등 강조 표시 주변에 표시해야 함(14포인트 이상 활자크기)

※ 감미료 종류(22종)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 * 당알코올(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감미료 경우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 표시 가능

<무당, 무가당 강조 식품 표시 흐름도>



- **자율 주류 열량표시 활자 크기 확대 시행**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주류에 열량 정보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용량 뒤 괄호로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12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로 굵게 표시**

<주류 열량 표시 예시>

		
<p>국내 주류 (주표시면)</p>	<p>수입 주류 (주표시면, OEM 제품 해당)</p>	<p>수입 주류 (정보표시면)</p>

※ 해당 자료는 영업자 편의를 위해 2025.2.19.기준으로 만든 자료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품목
<p>떡류</p> <p>당류가공품</p> <p>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p> <p>묵류</p> <p>식물성크림</p> <p>다류 중 액상차</p> <p>발효식초</p> <p>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p> <p>카레(카레(커리))</p> <p>향신료조제품</p> <p>김치류(김치속, 배추김치)</p> <p>절임류(절임배추 제외)</p> <p>조림류</p> <p>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p> <p>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p> <p>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p> <p>기타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p> <p>베이컨류</p> <p>건조저장육류</p> <p>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p> <p>식육추출가공품</p> <p>식육함유가공품</p> <p>알가공품류(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p> <p>산양유</p> <p>어육가공품류(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p> <p>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p> <p>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p> <p>조미김</p> <p>기타수산물가공품</p>

붙임 2
영양표시 확대 대상(3단계)

구 분	식품유형	구 분	식품유형
아이스크림 믹스류(5)	아이스크림믹스	농축유류	버터유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농축우유
	아이스밀크믹스		탈지농축우유
	샤베트믹스		가당연유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가당탈지연유
설탕류(2)	설탕	유크림류	가공연유
	기타설탕		유크림
당시럽류	당시럽류	버터류	가공유크림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버터
	올리고당가공품		가공버터
포도당	-	유청류	버터오일
과당류	과당		유청
	기타과당		농축유청
엿류	물엿	유당	유청단백분말
	기타엿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
	덱스트린	유함유가공품	-
동물성 유지류	식용우지	한천	-
	식용돈지	기타동물성가공식품	-
	원료우지	곤충가공식품	-
	원료돈지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어유		자라분말제품
	기타동물성유지		자라유제품
식용유지 가공품	모조치즈	추출가공식품	-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별꿀류	벌집꿀
다류	고형차		벌꿀
표준형영양 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사양벌집꿀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사양벌꿀
식단형 식사 관리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로열젤리류	로열젤리
장류	한식메주를 사용한 한식간장		로열젤리제품
	청국장	화분가공식품	가공화분
조미식품	카레(커리)분		화분함유제품
	고춧가루	생식류	생식제품
	실고추		생식함유제품
절임류	절임배추	즉석섭취·편의 식품류	신선편의식품
농산가공 식품류	찐쌀		간편조리세트
	효소식품	기타식품류	효모식품
식육가공품	갈비가공품		기타가공품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30.>

[시행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다.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라. 당류

마. 잼류

바. 두부류 또는 묵류

사. 식용유지류

아. 면류

자.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차. 특수영양식품

카. 특수의료용도식품

타.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파.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하.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 및 조림류

거. 농산가공식품류

너.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더. 알가공품류

러. 유가공품류

머. 수산가공식품류

버.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어. 즉석식품류
 저. 기타식품류
 처. 건강기능식품
 커.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 2) 얼음류
- 3) 다류: 침출차
- 4)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 6) 식초류: 희석초산
-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 8) 식염
-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 10) 주류
- 11) 포장육
-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라.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3) 영양강조 표시기준

가)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 등과 같은 용어 사용

(1) 일반기준

(가)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2)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중 "저지방"에 대한 표시조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저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0kcal미만일 때
	무	식품 100ml당 4kcal미만일 때
나트륨/ 소금(염)	저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저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미만일 때
지방	저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1.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저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포화지방	저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1g미만일 때
콜레스테롤	저	식품 100g당 20m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10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m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5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ml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이 섬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나)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 사용

(1)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3) (2)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감소, 라이트, 낮춘, 줄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함유"의 기준값보다 커야 한다.

(4)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과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

다만, 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제외)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젤리·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4)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과일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5)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라) 다음의 (1)부터 (3)까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가) (1) 및 (2)에 따른 나트륨/소금(염)의 "무" 강조표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염 제품이 아님" 또는 "나트륨 함유 제품임"을 해당 강조표시 근처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마) 가) (1) 및 (2)에 따른 '무당', 다)에 따른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1) 감미료(감미료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당알코올인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가) (1) 및 (2) 중 '저열량' 또는 나) (1)부터 (3)에 따른 '열량 감소'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있는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를 대신하여 ‘저열량 제품이 아님’ 또는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을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 (3)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2회 이상 반복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가장 큰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 (2)를 표시해야 하며, 그 외의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는 (1), (2)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 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도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클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감미료

거. 주류

1) 유형

가) 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일주

나)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다) 기타 주류

라) 주정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제조연월일(탁주 및 약주는 소비기한, 맥주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다만,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마) 내용량

바) 원재료명

사) 용기·포장 재질

아) 품목보고번호

자)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차)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카)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타)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파)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다만, 증류주류와 같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제외)

하) 기타표시사항

(1) 공통사항

주류는 에탄올(또는 알코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탁주

(가) 살균제품은 "살균탁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분질원료가 단일 원료인 경우 전분질원료에 대해 100%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전분질원료로 쌀 100%를 사용하였습니다.

전분질원료로 쌀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분질원료 : 쌀 100%

(3) 약주

살균제품은 "살균약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청주

발효시켜 얻은 에탄올 모두가 백미에서 기인한 때에는 "순"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5) 맥주

(가) 제품의 색상에 따라 담색맥주 또는 흑맥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열처리하지 않은 것은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제품 100 밀리리터(ml)당 열량이 30킬로칼로리(kcal)이하인 제품은 "라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6) 과일주

(가)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 포도주, 사과주, 딸기주 등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고, 포도주는 색상에 따라 적포도주, 백포도주, 홍포도주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탄산가스를 함유한 제품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소주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주류제조면허장과 용기주입제조장에서 동일한 소주를 제조·가공한 경우 동일한 원재료명을 표시할 수 있다.

(8) 위스키

(가) 원료주를 사용한 제품은 원료주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특정한 고유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9) 브랜디

(가) 원료주를 사용하는 제품은 원료주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특정한 고유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10) 일반증류주

(가) 원료주를 사용하는 제품은 원료주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고량주, 럼, 보드카, 진 등의 특정한 고유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11) 리큐르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인삼주, 매실주, 오가피주 등의 특정한 고유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12) 주정 및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3) 주정 및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및 각각의 증류주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물 제외) 및 식품첨가물은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소주원액", "위스키원액", "브랜디원액", "보드카원액"

(14) 주류의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다.

(15) 영업자가 주류(주정 제외)에 열량 정보를 스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 4. 1. 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다만, Ⅲ. 1. 거. 2) 하) (15)에 따라 주류에 열량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내용량 뒤에 괄호로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12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로 굵게 표시한다.